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

-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 (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)
- 신청 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여부 . 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불가, 당첨자 명단관리,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,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.
-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, 해당 기관에서 는 특히 '신청자격' 및 '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'를 충분히 안내,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Ι

공급일정 안내

구분	예정일자	비고		
입주자 모집공고	2018. 11월중 예정	일간신문 및 당사 홈페이지 (http://www.prugio.com/house/2018/seopangyo/index_w.aspx)		
견본주택 개관	2018. 11월중 예정	당사 견본주택 (아래 약도 참조)		
청약 일자	2018. 11월중 예정	인터넷 접수 (<u>https://www.apt2you.com-</u> 금융결제원 홈페이지)		
당첨자 및 동·호수 발 표	2018. 12월중 예정	금융결제원 홈페이지(<u>https://www.apt2you.com</u>) 및 당사 홈페이지 (http://www.prugio.com/house/2018/seopangyo/index_w.aspx)		

- ※ `18년 5월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홈페이지 청약시스템 개편으로 인터넷 접수
- ※ 노약자,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(10:00~14:00)
- ** 방문 접수 시 구비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위 일정은 업무 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\prod

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

■ 신청자격

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하여 주택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시공사인 ㈜대우건설에 통보한 분
-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시 성남시 1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, 서류접수시 증빙서류와 상이 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됩니다.
- 청약통장 가입 요건(국가유공자, 장애인 제외)
-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그

지역별,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

- ② 청약 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신 분
- ③ 청약 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㎡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신 분
- ※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입니다.
- 세대주,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.
- 가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 재되어

있지 아니한 사람

- 나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- 다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- 라.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

※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

1.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(단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

해당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외)

2.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 55조에 의하여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(기관추천, 신혼부부, 다자녀, 노부모특별공급 등) 의

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공급

■ 당첨자 선정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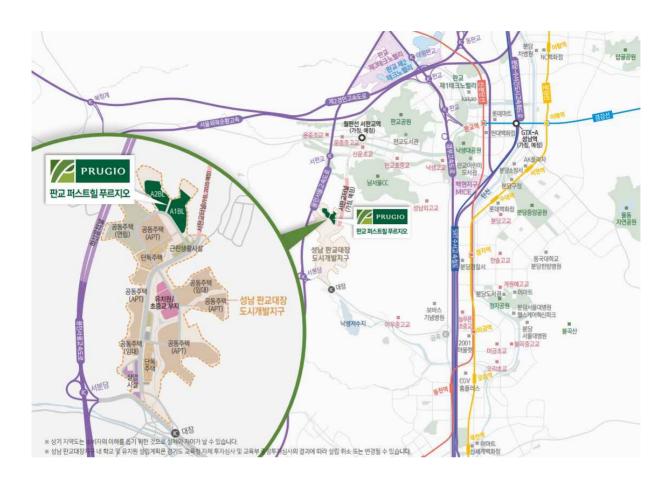
-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조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
-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시공사인 ㈜대우건설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, 해당기관에서 특별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함 [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]
- 당첨자에 대한 동·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(금융결제원)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 항



유의사항 안내

- 청약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, 해당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·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,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㈜화천대유자산관리 및 ㈜대우건설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금회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확정되므로 각 기관에서 시공사인 ㈜대우건설로 통보한 사항(주택형 등)의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.
-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, 신청자는 타 특별공급(다자녀 가구, 신혼부부, 노부모 부양) 및 일반 공급에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,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 체결 불가, 당첨자 명단관리,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.
- 신청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(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)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 여부.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계약체결 불가, 당첨자 명단관리, 청약통장 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,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.
- 신청자가 상기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,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, 특히 무주택 구성원과 관련된 것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추천 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또한,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됨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미신청시 당첨자 선정(동·호 배정) 및 계약불가)

현장 위치도



Location

판교와 **분당**의 풍요로운 **인프라**를 하나로! **앞선 생활**을 약속하는 **준비된 프리미엄**

쾌속 교통망을 통한 빠른 접근성

- · 판교와 터널 하나로 바로 연결(서판교터널, 가칭·예정)
- 용인서울고속도로 등을 통해 강남, 서초, 송파 등 빠른 연결

판교와 분당을 아우르는 생활 인프라

- · 백화점, 대형마트, 병원 등 판교와 분당 편의시설 이용 편리
- · 대장지구 내 상업지구 및 근생시설 예정

수준 높은 교육을 위한 명문 학군

· 낙생고 등 분당 지역의 명문 학군을 누릴 수 있는 우수한 교육환경

내일이 기대되는 탁월한 미래가치

- · 월곶-판교선(서판교역, 가칭·예정) GTX-A(성남역, 가칭·예정) 등 교통계획 호재
- · 판교 제2 및 3테크노밸리 사업 확정 등 개발 프리미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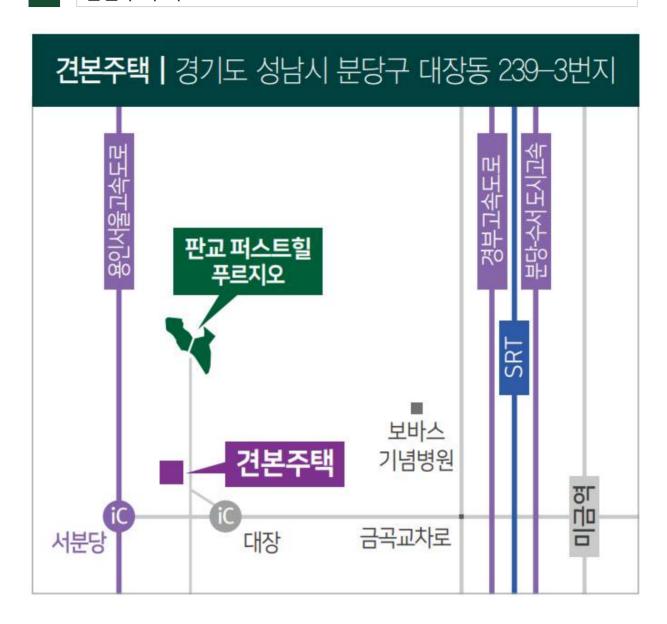








1_서판교터낼(가칭, 예정) 2_판교 현대백화점 3_낙생고등학교 4_판교테크노밸리



특별공급 대상자 명단

1 추천자 명단

타입	번호	ИM	주민등록번호	연락처	거주요건(해당사항 √체크)		
		성명			성남시 1년 거주	기타 (경기도)	비고
84A	1						
84B	1						
84C	1						
84D	1						

특별공급 예비추천자 명단

1 예비추천자 명단

타입	번호	ИM	주민등록번호	연락처	거주요건(해당사항 √체크)		
		성명			성남시 1년 거주	기타 (경기도)	비고
84A	1						
84B	1						
84C	1						
84D	1						